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4일

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박 성 애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 따라 저소득주민 용자대상자 선정 심의·의결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,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화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기하고 전세입주보증금 확대지원으로 전세주택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현행 연대보증인만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선택적 대안 필요(안 제4조)
  -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관련 서류 등을 규칙에 반영
-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변경(안 제5조)

- 현행 : 구미시정조정위원회
- 개정 :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
- 현 부동산 시세에 부합하게 전세입주보증금 확대 지원(안 제6조)
  - 현행 : 2천만원 이하
  - 개정 : 3천만원 이하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구 춘 서

- 본 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 -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 중인 “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”과 관련하여 용자 신청 시 연대보증인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용자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“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”로 변경하며, 현 부동산 시세에 맞게 전세입주보증금을 기존 “2천만원이하”에서 “3천만원이하”로 용자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,
  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